

**- 광융합산업 혁신 생태계 기반 구축(2차년도) -**  
**2025년 광융합산업 혁신 생태계 기반 구축사업**  
**지원사업 통합공고**

산업통상자원부 『광융합산업 혁신 생태계 기반 구축(2차년도)』의 일환으로 국내 전국 광융합산업체 차세대 유망 제품의 대한 신제품 개발 지원을 통한 글로벌 LUXKO 공동브랜드, 광융합제품 시험검사 지원, 해외시범설치사업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, 참여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년 2월 17일

**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장**

## 1. 모집개요

- 사업명 : 광융합산업 혁신 생태계 기반 구축(2차년도)
- 지원내용 : 시제품 제작지원, 광융합제품 시험검사 지원, 해외시범설치 지원,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 등
- 공고개요
  - 공고기간 : 2025. 2. 17(월) ~ 3. 18(화) 17:00까지(30일간)
  - 사업기간 : 지원기업 선정 후 각 지원사업별 아래 표 참조

구분	지원사업명(프로그램)	사업기간	최대지원금(천원)
1	광융합제품 시제품 제작 지원	지원사업 선정 후 ~ '25. 6. 30(금)	10,000
2	광융합제품 시험검사 지원	지원사업 선정 후 ~ '25. 6. 30(금)	10,000
3	해외시범설치 지원	지원사업 선정 후 ~ '25. 6. 30(금)	20,000
4	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지원	2025. 5. 12 ~ 16	지원사항 참조
5	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	지원사업 선정 후 ~ '25. 10. 31(금)	5,000

- 지원대상 : 전국 광융합산업 관련 기술 및 제품 보유 제조사
- 신청방법 : 이메일 신청(david@kapid.org)  
※ 지원사업 신청 시 자사 양식을 활용한 지원사업 신청공문 제출 必 (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)
- 접수처 :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마케팅팀 정동환 전임(062-605-9614)

## 2. 사업 목적

- 전국 광융합산업체 차세대 유망 제품의 대한 신제품 개발지원을 통한 글로벌 LUXKO 공동브랜드 시험검사 지원, 해외시범설치사업 등 국내 광융합 글로벌 기업 육성을 위한 혁신 성장동력 제공
- 미주 UL, 유럽 CE 수준에 버금가는 기술·제품의 신뢰성 인증 시험검사 지원으로 LUXKO 광융합 공동브랜드 글로벌 경쟁력 강화
- 국외 시장개척단 파견 등 성과확산마케팅을 통한 공동브랜드 및 해외 시범 사업 성과 확산 및 국내 광융합산업 관련 기업 해외 진출 기회 증진

## 3. 지원기업 선정기준

- 사업비의 적합성 등을 고려 70점 이상 획득 기업 선정
    - 평가위원회는 지원 필요성, 타당성, 기대효과 등 평가
    - (중복성 심사) 중복으로 판정된 과제의 경우 구체적인 평가의견 기재 후 지원대상 제외
      -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목표 및 내용, 최종성과가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에 의하여 지원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
      - 지원이 확정된 사업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
- ※ 선정 세부기준 및 평가사항 (별첨2 참조)

## 4. 지원 내용

(단위 : 천원, %)

지원항목	지원내용	세부내용	최대 지원금	기업 자부담	지원 목표	총 지원금									
광융합제품 시제품 제작 지원	광융합 차세대 유망 제품 신제품 개발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광융합기술을 활용한 시장선도형 신규제품 <u>시제품 제작지원</u></li> <li>- 지원사항 : 재료비(재료, 원료등), 외주용역비(기구·회로 설계, 목업 등), 설비구입비(SW 등) 등</li> <li>- 결과물 검수 : 결과보고서 및 결과물 확인 (제품, 설계도면 등)</li> </ul>	10,000	20% 이상	8건	80,000									
공동브랜드 제품 시험인증 및 규격제정 지원	광융합제품 시험검사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광융합 제품 시험검사 지원</li> <li>- 지원사항 : 광융합제품 시험검사비 및 인증 취득비 지원</li> <li>- 결과물 검수 : 결과보고서 확인 (신청 제품 시험 인증서 등)</li> </ul>	10,000	30% 이상	7건	70,000									
해외시범설치 지원	해외 프로젝트 시범설치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해외시범설치 지원</li> <li>- 지원사항 : 제품 설치비, 현지 운송 물류비 및 통관비 100%</li> <li>- 결과물 검수 : 결과보고서 확인 (신청 추진전략 대비 설치 결과 및 성과(계약 등))</li> </ul>	20,000	설치 대상 제품 현물	2건	40,000									
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지원	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2025 일본 광융합 시장개척단 파견 지원</li> <li>- 파견국가 : 일본(도쿄)</li> <li>- 파견일정 : '25. 5. 12 ~ 16</li> <li>- 지원사항</li> </ul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지원항목</th><th>세 부 내 용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행사장 임차비</td><td>수출상담장 임차비 100%</td></tr> <tr> <td>항공료</td><td>Economy Class 기준 기업당 1인 70%</td></tr> <tr> <td>기타</td><td>통역 및 공동차량 지원</td>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결과물 검수 : 결과보고서 확인 (파견결과 및 증빙자료 등)</li> </ul> <p>※ 상기 지원사항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</p>	지원항목	세 부 내 용	행사장 임차비	수출상담장 임차비 100%	항공료	Economy Class 기준 기업당 1인 70%	기타	통역 및 공동차량 지원		지원 사항 참조	-	5개사	30,000
지원항목	세 부 내 용														
행사장 임차비	수출상담장 임차비 100%														
항공료	Economy Class 기준 기업당 1인 70%														
기타	통역 및 공동차량 지원														
해외전시회 참가지원	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해외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</li> <li>- 지원사항</li> </ul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지원항목</th><th>세 부 내 용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부스비</td><td>대지임차료 및 장치비의 70%</td></tr> <tr> <td>운송비</td><td>운송료 1CBM 지원 : 편도 100% 왕복 50% * 30만원 이내</td></tr> <tr> <td>항공비</td><td>왕복 항공료 60%(1인 Economy class 기준)</td>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결과물 검수 : 결과보고서 확인 (파견결과 및 증빙자료 등)</li> </ul>	지원항목	세 부 내 용	부스비	대지임차료 및 장치비의 70%	운송비	운송료 1CBM 지원 : 편도 100% 왕복 50% * 30만원 이내	항공비	왕복 항공료 60%(1인 Economy class 기준)	5,000	대지 임차료 및 장치비 30%	14건	70,000	
지원항목	세 부 내 용														
부스비	대지임차료 및 장치비의 70%														
운송비	운송료 1CBM 지원 : 편도 100% 왕복 50% * 30만원 이내														
항공비	왕복 항공료 60%(1인 Economy class 기준)														

※ 부가가치세(VAT)는 기업에서 부담 원칙(공급가액 기준 지원)

## 5. 지원 절차



## 6. 지원 제외대상(결격사유)

- 사업자등록증 내 제조 업종이 포함되지 않은 기업일 경우
- 사업기간(협약기간) 내 결과물 제출(예: 인증지원의 경우 성적서, 인증 취득 등)이 불가한 경우
-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나 의무사항(보고서 제출, 기술료·정산금·환수금 납부 등) 불이행 중인 경우
- 부도,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,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- 휴·폐업 중인 기업인 경우
- 허위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될 경우
- 관련 요청사항에 대해 불응하거나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
-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
## 7. 기타 유의사항

- 신청 취소 및 참여제한
  -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받고 있거나, 지원신청 제품은 중복지원으로 지원금 지급 불가

- 중복지원 시 본 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며, 향후 추진되는 지원사업에 2년간 참여제한
- 관련문서(첨부서류 등)의 허위제출을 통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액은 반납하여야 하고, 2년간 지원사업 참여 제한을 받을 수 있음
- 선정 후 특별한 사유 없이 협약체결 하지 않은 경우 선정 취소
- 해외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의 경우 선정 평가 이후 전시회 변경 불가

## ○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 환수

-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사항을 위반한 경우
- 허위 계약체결 시(제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)
- 사업공고 또는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
- 지원이 확정된 제품에 대해 타 정부기관 및 지자체, 기관으로부터 지원받거나 지원을 신청한 경우
- 사업기간중 화의,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 대상기관이 되는 경우
- 지원기간내 기업부담금 미납 등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## 8. 제출 서류

- 지원 참가 신청서류(아래에 정한 순번대로 제출)

구분	세부서류	문서 번호	필수 여부
	자사 양식을 활용한 참가 신청 공문	-	○
(1)	통합지원 참가신청서	양식1	○
(2)	시제품 제작 지원 세부 신청서 및 견적서	양식2	
(3)	광융합제품 시험검사 지원 세부 신청서 및 견적서	양식3	
(4)	해외시범설치 지원 세부 신청서	양식4	해당기업 제출
(5)	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지원 세부 신청서	양식5	
(6)	해외 개별전시회 참가 지원 세부 신청서	양식6	
(7)	사업자등록증 사본	-	○
(8)	국세/지방세 납입 증명서		○
(9)	기타 참고 서류 (중소기업 확인서, 특허증, 혁신기업인증서,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등)	-	해당기업 제출
	* 지원사업 신청 시 자사 양식을 활용한 지원사업 신청 공문 제출 必 * 각종 증명서, 인증서, 인감 등이 날인되어 있는 서류 등이 사본인 경우에는 반드시 '원본대조필' 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. * 각 서류 첨부 순서는 반드시 번호순으로 작성. * 제출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될 수 있음. * 기타참고서류(중소기업 확인서, 특허증, 혁신기업인증서,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등)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지원사업 선정 우대		

※ 유의사항 :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